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어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3 발의연월일: 2020. 6. 18.

발 의 자: 어기구 • 유동수 • 문진석

서영석 · 주철현 · 김주영

박영순・박 정・서동용

김상희 · 노웅래 · 정일영

박재호 • 유준병 의원

(149]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(이하 "리쇼어링"이라 함)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도 개정에서 리쇼어링 시 조세감면·자금지원·입지지원·인력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확대한 바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선정요건의 엄격성, 대상업종의 제한성 등으로 인 해 해외진출기업의 리쇼어링 확산에 여전히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.

이에 일부 규정의 개정을 통해 리쇼어링을 활성화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,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일자리 창 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.

주요내용

- 가. "해외진출기업"의 요건에 '2년 이상 계속' 요건을 삭제하고, 제조 업·정보통신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이외에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에 대비하여 방역이나 면역 관련 분야 등도 업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'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'을 추가하고자 함(안 제2조제 1호).
- 나. "국내복귀"의 개념에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 요건을 삭제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요건을 완화하고, 해외생산제품의 국내생산을 위한 사업장 신설·증설 이외에 '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'(아웃소싱)도 포함시킴(안 제2조제3호).
- 다.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어,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규모를 총 15명 이내에서 총 20명이내로 확대함(안 제6조제3항).
- 라.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및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리쇼어링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는바, 해외사업장 축소 규정을 삭제하고,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시킴(안 제7조제1항).
- 마. 신성장동력산업 분야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·안전 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

있는 근거를 신설함(안 제12조의2 신설).

- 바. 동반리쇼어링 요건과 관련한 '업종 연관성' 및 '사업장 인접성' 요건을 삭제하고, '시간적 인접성'을 추가하여 동반리쇼어링의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6조제2호).
- 사. 동반리쇼어링 이외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'협력형 복귀기업'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, 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계망을 갖춘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시켜 효과를 극대화함(안 제16조의2신설).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"2년 이상 계속하여 「통계법」"을 "「통계법」"으로, "정보통신업 및 「산업발전법」"을 "정보통신업, 「산업발전법」"으로, "지식서비스산업을"을 "지식서비스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 또는 축소(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"을 "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"으로, "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·증설하는 것을 말한다"를 "말한다"로 하며, 같은 호에 각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해외진출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 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 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·증설하는 것
- 나.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

제6조제3항 중 "15명"을 "20명"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 중 "기업이 아닐"을 "기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자금지원 특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·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
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조성할 것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일반 복귀기업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		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				
1. "해외진출기업"이란 다음 각	1				
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					
을 말한다.					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				
나. 기업 자신 또는 자신이	나				
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					
기업이 소유한 해외사업장					
을 통하여 <u>2년 이상 계속</u>	「통계법」				
<u>하여 「통계법」</u> 제22조에					
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					
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					
조업· <u>정보통신업 및 「산</u>	<u>정보통신업, 「산업발전</u>				
<u>업발전법」</u> 제8조제2항에	법				
따른 <u>지식서비스산업을</u> 하	<u>지식서비스산업 및 대</u>				
고 있을 것	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		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		
3. "국내복귀"란 <u>해외진출기업</u>	3 <u>다음 각 목</u>				
<u>이 해외사업장을 청산·양도</u>	<u>에 해당하는</u>				
또는 축소(국내에 사업장이					
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					

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. 이하 같다)하고,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·증설하 는 것을 말한다.

<u><신</u>설>

<신 설>

4. (생략)

제6조(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) 제6조(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)

- ① ② (생략)
- ③ 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 상자원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.
- ④ (생 략)

다.

가. 해외진출기업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 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 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 내에 신설·증설하는 것

나.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조 달하던 제품 또는 서비스 를 국내에서 조달하는 것

4. (현행과 같음)

-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20명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제선정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있다.

- 1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에 따 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받은 <u>기업이 아닐</u> 것
- 2.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 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건
- 3. (생 략) ② ~ ⑤ (생 략) <신 설>

7조(지원대상	국내복귀기	업의
선정) ①		
1		
<u>기업으로</u>	대통령령	<u> 영으로</u>
정하는 기간에	해당하지	아니
<u>할</u>		
<u><삭 제></u>		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 제12조의2(자금지원 특례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, 소재·부품·장비산업 분야 및 국민 건강·안전산업 분야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에 대하여 자동화 생산설비투

제16조(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국내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<u>것</u>
- ②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

	<u>자</u>	등	대분	통령	령으	모로	정	하는	용-
	<u>도</u>	게	필요	-한	자	금을	. ই	현금의	으로
	지역	원힐	수	있	<u>다.</u>				
제	163	조(등	동반	복구	フ) ¢	섭 에	τ	개한	기
	원)	1)						
	1.	(현	행과	· 같	음)				
	<u>2. </u>	국니]] 에	신식	설되	거니	} =	증설 5	티는
	<u>入</u>	<u>}업</u>	장을	- 디	∦통i	<u> </u>	<u>o</u>	로 2	정하
	<u>r</u>	<u>-</u> 7	<u>기간</u>	내	게 3	<u> </u>	할	<u>것</u>	
	2	\sim	4	(현	행과	같	음)		
제	163	준의	2(ই	립력 ¹	형 -	복귀	7]	업에	대
								방자기	
								<u> </u>	
	<u>국</u> ι	<u>H</u>	수요	_7] ¢	<u> 업과</u>	연	계:	하여	복
	귀	하는	:	우	일1	반 .	복구	4719	겁보

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